

건설기계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(단,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)
소유자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주민(사업자 또는 외국인) 등록번호	
	주소	(전화번호:)	

사용본거지(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,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)

건설기계명	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
제작년도	차대일련번호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건설기계제작증(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2.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수입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3. 매수증서(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4.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5. 건설기계제원표6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(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) <p>※ 주의사항: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,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등록지입니다.</p>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시·도		시·도		시·도		시·도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